

충청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0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0월 11일

3. 제안 사유

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 (대통령령 제13451호 91. 8. 16)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 및 위원수를 적정인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.

4. 주요 글 자

가. 기존의 위원구성이 학무국장, 관리국장,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함.

나. 부칙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의 개정을 부기함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개편 및 위원수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, 부칙 제2조에 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기함은 단순한 명칭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례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개정조례안 : 별첨

7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8. 제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(임시회) 심의결과 : 별첨

충청북도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(대통령령 제13451호, 91. 8. 16) 시행에 따라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각교육장”을 “하급교육청교육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중등교육국장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갑류”를 삭제한다.

③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중 “을류”를 삭제한다.

④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부교육감”으로, “사회체육과장”을 “중등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3항중 “학무국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과학기술과장, 관리국 관리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, 부녀청소년과장”을 “초등교육국장, 관리국장, 사회교육체육과장, 초등장학과장, 과학기술과장,

행정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, 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중 “사회체육과”를 “사회교육체육과”로 한다.

⑤ 단체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부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5항 제1호중 “학무국장, 관리국장”을 “본청 국장급이상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1항중 “10월중에 교육감이”를 “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”로 한다.

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5항 제2호중 “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이 된다”를 “부위원장은 관리과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)이 되며 위원은 각계장 (단, 청주교육청은 각과장 및 각계장)이 된다”로 한다.

등조 동항 제3호중 “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장이 되고”를 “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장 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)이 되고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조 (목적) (생 략)</p> <p>제2조 (조직) 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 감이 된다.</p> <p>② 위원은 <u>학무국장, 관리국장, 기획감사</u> <u>담당관 및 각과장으로</u> 한다.</p> <p>제3조 - 제6조 (생 략)</p>	<p>제1조 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 ①</p> <p>.....</p> <p>② 위원은 <u>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 이상</u> <u>11인 이내의 위원으로</u> 한다.</p> <p>제3조 - 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 (시행일)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</p> <p>제2조 (생 략)</p>

부칙 제2조에 의거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조례의 내용

현 행	개 정 (안)
<p><u>제명 :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</u></p> <p align="center"><u>설치조례</u></p> <p>제2조 (설치) <u>각 교육장</u>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를 둔다.</p> <p>제3조 (구성) ① ② 도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학무국장</u>이 되며</p>	<p>제2조 (설치) <u>하급교육청 교육장</u>..... </p> <p>제3조 (구성) ① ② 부위원장은 <u>중등교육국장</u></p>
<p><u>제명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</u></p> <p align="center"><u>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</u></p> <p>제3조 (여비)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<u>국내여비규정(별표1)의</u> <u>제2호갑류</u> 해당자의 여비를 지급한다.</p>	<p>제3조 (여비) <u>국내여비규정(별표1)의 제2호 해당</u> <u>자의</u></p>
<p><u>제명 :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</u></p> <p>제16조 (수당과 여비)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은..... <u>국내여비 규정 별표2</u> <u>여비정액표의 제2호 을류</u> 해당자에 준 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수당과 여비) <u>국내여비규정 별표2</u> <u>여비정액표의 제2호 해당자</u>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명 :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</p> <p>제2조 (조직)</p> <p>② 협의회 위원장은 <u>학무국장</u>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사회체육과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u></p> <p>③ 협의회장은 <u>학무국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과학기술과장, 관리국판리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, 부녀청소년과장을</u>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</p>	<p>제2조 (조직) ①</p> <p>② <u>부교육감</u></p> <p>..... <u>중등교육국장</u></p> <p>.....</p> <p>③ <u>초등교육국장, 관리국장, 사회교육체육과장, 초등장학과장, 중등장학과장, 과학기술과장, 행정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, 청소년과장을</u> 당연직위원으로 하고</p>
<p>제명 : 단재교육상조례</p> <p>제5조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상 수상대상자 추천마감후 15인이내로 위촉하며, <u>학무국장</u>은 당연직위원이 되고</p>	<p>제5조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부교육감</u></p> <p>.....</p>
<p>제8조 (추천 및 심사) ① - ④ 항 생략</p> <p>⑤ 교육상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는자로 한다.</p> <p>1. 교원 및 일반부문 : <u>교육장, 고등학교장, 학무국장, 관리국장</u></p>	<p>제8조 (추천 및 심사) ① - ④ 항 : 현행과 같음</p> <p>⑤</p> <p>.....</p> <p>1. 교원 및 일반부문 : <u>교육장,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급이상</u></p>
<p>제10조 (시상) ① 교육상은 매년 1회 10 월중에 <u>교육감이</u> 시상하며</p>	<p>제10조 (시상) ① 매년1회 <u>교육감이</u>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</p> <p>.....</p>

현행	개정 (안)
<p>제명 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</p> <p><u>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</u></p> <p>제7조 (공유재산심의회) ① - ④항 생략</p> <p>⑤ 교육청에는</p> <p>1.</p> <p>2.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관리과장이 되며</u> 위원은 <u>각 계장이 된다.</u></p> <p>3.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<u>관리과 경리계장이 되고</u>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7조 (공유재산심의회) ① - ④항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교육청에는</p> <p>1.</p> <p>2. 부위원장은 <u>관리과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)</u>이 되며 위원은 <u>각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각과장 및 각계장)</u>이 된다.</p> <p>3. <u>관리과 경리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)</u>이</p>

대통령령 제13451호(1991. 8.16)

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(부분발체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서울특별시·직할시 및 도의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교육감)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, 직할시 및 도의 부교육감은 이사관·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.

제3조(공무원의 정원)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
②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제 2 장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 : 생 략

제 3 장 대구직할시·인천직할시·광주직할시·대전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

제13조(하부조직) ① 대구직할시·인천직할시·광주직할시·대전직할시 및 도의 교육청에 총무과·초등교육국·중등교육국 및 관리국을 둔다.

②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, 부교육감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.

제14조(공보담당관) ① 공보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.

제 15 조(기획감사담당관)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6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 감을 보좌한다.

제 16 조(행정관리담당관)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 감을 보좌한다.

제 17 조(총무과) ①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총무과는 제8조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 18 조(초등교육국) ① 초등교육국에 초등장학과 및 초등교직과를 둔다.

② 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.

③ 초등장학과는 제9조 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④ 초등교직과는 제9조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 19 조(중등교육국) ① 중등교육국에 중등장학과·중등교직과·과학기술 과 및 사회교육체육과를 둔다.

② 국장·중등장학과장·중등교직과장 및 과학기술과장은 장학관으로, 사 회교육체육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.

③ 중등장학과는 제10조 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④ 중등교직과는 제10조 제4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⑤ 과학기술과는 제10조 제5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⑥ 사회교육체육과는 제10조 제6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 20 조(관리국) ① 관리국에 행정과·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.

② 국장은 서기관으로, 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, 시설과 장은 기계기좌·전기기좌·토목기좌 또는 건축기좌로 보한다.

- ③ 행정과는 제12조 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- ④ 재무과는 제12조 제4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- ⑤ 시설과는 제12조 제5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
제 4 장 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

제 21 조(교육장의 직무) 교육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 22 조(하부조직) ① 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(이하 “하급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표 3의 하급교육청에 학무국 및 관리국을, 별표 4의 하급교육청에 학무과·사회교육체육과·관리과 및 재무과를, 기타의 하급교육청에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.

② 학무국에 초등교육과·중등교육과 및 사회교육체육과를 둔다.

③ 관리국에 관리과·재무과를 기타의 하급교육청에 학무과 및 관리과를 둔다.

④ 학무국장·학무과장·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시설과장은 지방기계기좌·지방전기기좌·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,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 23 조(정원의 배정) 서울특별시·직할시 및 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별 정원배정은 교육부장관이, 시·도의 하부조직별 정원배정은 당해

시·도의 교육감이 행한다.

제 24 조(위임규정) 과의 하부조직과 기타 이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다른법령의 폐지) 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의 교육위원회직제는 이를 폐지한다.

제 3 조(교육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감 정원 15인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선출될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